

사업방법서 별지

(근로자재해공제)

1. 공제의 종류 : 근로자재해보상 / 국내
2. 공제 종목의 명칭: 근로자재해공제
3. 공제의 목적
법률상의 배상책임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기간 : 공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나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
5. 공제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나.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9조(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)의 제3호에 따라 계약자 특성에 따른 공제료의 할인할증은 “언더라이팅 할인할증기준”에 따른다.
6. 기타
공제료의 반환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